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산업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개정 추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법률 제16998호(' 20. 2. 11.)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나. 법률 제19235호(' 21. 1.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다. 산업부 훈령 제131호(' 18. 8. 3.) (산업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라. 국과연민군기술협력센터-3567(' 22. 7. 16.)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개정(안) 승인 건의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개정 계획 보고서

2. (산업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안) 본문. 끝.

공업사무관

과장

전결 2024. 3. 19.

협조자 규제개혁법무담 박위규
당관 과장

시행 첨단민군협력지원과-152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4153

팩스번호 044-203-4730

/ wpro777@korea.kr

/ 비공개(5)